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21
----------	------

제출년월일 : 2026년 2월 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과 문언을 일치시키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체납시세 징수포상금의 대상에 과장급(시는 4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5급 공무원)을 제외하고(안 제2조제4항)
-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문언에 맞게 “납부독려”를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개정(안 제2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지방회계법」 등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5. 11. 13. ~ 12. 3.) 결과: 의견있음(미반영)

제출기관	검토의견	검토결과
강남구	고액채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 및 고질 채납자 상담, 징수전담반 운영 등 채납 관리와 징수업무 전반을 총괄 수행하고 있어 조례상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법령 및 조례상 특별한 공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및 방향제시, 점검·분석 등 총괄적인 관리·감독 업무 등을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워 미반영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강경일 (☎ 2133-3471)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사람에게는 제3조 및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를 “지난 연도 체납액(부과 당해 연도”로, ““체납액””를 ““체납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말한다) 체납액을 납부 독려”를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장급(시는 3급)을 “과장급(시는 4급)으로, “4급”을 “5급”으로,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그징수액”을 “그 징수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1,000분의 43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를 “1,000분의 43”으로 한다.

제6조제6항제2호 중 “제3조 및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3조 및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 다만”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매분기초”를 “매분기 초”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한 경우

2.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시는 3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4급 공무원)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징수액의 100분의 1
2. ~ 8. (생략)
9.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액

납부독려-----

-----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과장급(시는 4급)-----

----- 5급 -----

----- 공무원에

게-----

----- . -----

----- 경

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지급기준) -----

----- .

1. -----

----- 그 징수액-----

2. ~ 8. (현행과 같음)

9. -----

체납액 중 정리보류(기존 결
손처분 포함)된 고액체납액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
는 제2조제1항제3호의 지급대
상이 되는 징수액의 1,000분의
43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⑤
(생략)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1. (생략)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급
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생략)

⑦ ~ ⑨ (생략)

제8조(지급신청) ① 제2조제1항제
1호 및 제2호와 제3조 및 제4조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
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 자치구공무원 또
는 민간인의 포상금 신청에 대
하여는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
사결정서를 붙여 일괄신청하여
야 한다.

----- 1,000분의
43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현행과 같음)
2. 제3조-----

3. (현행과 같음)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신청) ① -----
----- 제3조-----

----- 대
해서-----

-----.

② (생략)

제9조(지급) ①·② (생략)

③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매 분기초에 자치구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예상액을 미리 청구받아 예산으로 재배정하고,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매
분기 초-----

-----.

④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과장급 관리직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 제외하는 것으로 제외된 포상금은 징수담당자에게 배정되므로 서울시 예산의 증감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38세금징수과 강경일(2133-3471)